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가합521949 판결 [보증금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신용보증기금

변론 종결2014. 4. 21.

판결 선고2014.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067,710원 및 그 중 437,000,000원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4. 6. 13.까지 연 4.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계약 등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공장에 해썹(HACCP)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2009. 12. 2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하 '해썹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 토지상의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 2010. 3. 10. C와 사이에 공장증축계약(이하 '공장증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2. 18. E기계(F)와 사이에 공장에 설치할 컷트미역 건조시설 등의 공급계약(이하 '기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해썹시공계약

약정일: 2009. 12. 21.

공사명 : (주)A 해썹시공계약

공사장소 : 전남 강진군 B

공사기간 : 2010. 1. 20. ~ 2010. 4. 20.

공사계약금액 : 897,000,000원

결제조건: 계약금 200,000,000원, 잔금은 모든 공사 완료 후 익월 지급

하자보증기간: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이행증권: 계약금액의 3%

(2) 공장증축계약

약정일 : 2010. 3. 10.

공사명 : (주)A 공장신축공사

공사장소 : 전남 강진군 B (주)A

착공 연월일 : 2010. 1. 30.

준공예정 연월일 : 2010. 6. 30.

계약금액 : 47,600,000원(부가세 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배정 후 일시불 지급

(3) 기계공급계약

약정일 : 2010. 2. 18.

공급물품 : 컷트미역 건조시설, 미역 세척시설, 건조미역 선별라인, 보일러 및 기타 시설(이하

"컷트미역 건조시설 등")

공급대금 : 1,509,140,000원

대금지불방법 : 계약금 200,000,000원, 중도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배정 자금으로 대체,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

기계설치장소 : (주)A G공장

기계설치일자 : 2010. 6. 30. 예정

나. 대출계약 및 신용보증계약

A은 위 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키 위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보증키 위해 2010. 6.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대출계약

약정일 : 2010. 6. 9.

대출개시일 : 2010. 6. 15.

대출만기 : 2018. 6. 14.

대출과목 : 기업시설 중소기업 재정자금 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대출한도금액 : 금 1,500,000,000원

이자 : 정상이자 연4.9%, 지연이자(연체이자) 3개월 미만 연17%, 3개월 이상 연 19%

대출실행방법 :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

상환방법 : 대출개시일로부터 36개월 거치, 2013. 12. 16.부터 매 6개월마다 분할상환, 이자
3개월마다 납입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약정일 : 2010. 6. 9.

당사자 : 보증수익자 원고, 피보증인 주식회사 A

보증원금 : 금 1,425,000,000원

보증기한 : 2018. 6. 14.

대출과목 : 중소기업진흥공단대출 신성장기반자금

대출예정금액: 금 1,500,000,000원, 보증비율 95%

특약 : 1. 사업장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18억 원 이상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 취급 2. 당해시설(건물증축, 기계설비) 준공 즉시 18억 원 이상 공장저당법에 의한 2순위

근저당권에 담보목록 추가하여 본 보증을 712,500,000원 이상 해지

(3)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는 「보증특약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원고가 보증특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되며(약관 제5조 제1항),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약관 제23조 제1항 제1호)」고 규정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0. 5. 31. A 소유의 B 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D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6. 10. 채권최고액 18억 원으로 하는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11. 10. D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 추가하고, 2011. 1. 20. 컷트미역 건조시설 등이 준공되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목록(목록 제2011-1호, 제2011-2호)을 제출하여 컷트미역 건조시설 등을 담보로 추가하였다.

다. 대출실행

(1) 한국은행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시설자금 취급시에는 관계 증빙서류 및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계획된 용도 및 시기에 맞추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시설자금 지원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의 내규 제460조 제4항에 의하면, 여신의 자금용도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 및 현물 또는 시설의 확인방법 등을 통하여 계획된 용도 및 시기에 맞추어 여신을 취급함으로써 시설자금지원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73조 제1항에 의하면, 대출금 지급을 위해 기성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원고는 해썹시공계약 및 공장증축계약에 따른 기성고 조사를 거쳐 기성고에 원고의 내규에 따른 융자비율 61.14%를 곱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여신한도를 산정한 다음, A의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의뢰서'에 따라 C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대출금 합계 총 3억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A은 해썹시공계약에 따라 내·외부 공조시설, 스팀보일러, 수변전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장을 청결구역, 준청결구역으로 분리하고, 바닥을 에폭시로 도포하는 등 해썹 설비를 위한 작업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해썹시설로 지정받지는 못하였다.

(3) 원고는 기계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여신한도를 산정한 다음, A의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의뢰서'에 따라 E기계(F)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대출금 합계 8억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당시 A은 공급계약에 따라 컷트미역 건조시설 등의 구비를 위한 3단자동건조기 등을 공급받아 설치하였다.

[표1]

1차	2010. 5. 11.	181,037,979	500,000,000	681,037,979	416,386,620
2차	2010. 6. 17.	251,765,790	829,950,000	1,081,715,790	281,361,034
3차	2010. 6. 22.	300,809,850	1,056,300,000	1,357,109,850	199,736,962
4차	2010. 6. 25.		1,207,200,000	1,508,009,850	108,082,080
5차	2010. 7. 8.	472,356,369	1,358,100,000	1,830,456,369	209,141,024
6차	2010. 7. 26.	635,688,073		1,993,788,073	109,002,027

[표2]

1차	2010. 6. 15.	100,000,000	280,000,000	380,000,000	원고는 시공사가 지정한 통장계좌에 해당 금액을 직접 입금
2차	2010. 6. 21.	50,000,000	200,000,000	250,000,000	
3차	2010. 6. 25.	30,000,000	150,000,000	180,000,000	
4차	2010. 6. 28.		100,000,000	100,000,000	
5차	2010. 7. 12.	100,000,000	100,000,000	200,000,000	
6차	2010. 7. 26.	100,000,000		100,000,000	
합계	380,000,000	830,000,000	1,210,000,000		

라. 보증사고 등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라 계약의 일부를 해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의 이행을 구할 당시 보증잔액은 437,000,000원이었다.

(2) A은 2012. 2. 24.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A은 2011. 12. 8.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2012. 2. 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5. 21.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하였고, 보증금 통지 당시 대출잔액은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3) 원고는 2012. 2. 28.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고, 2012. 4. 17. 보증잔액 437,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6,067,71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기성고 조사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22호증, 을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 원고는 시공사에 조회하거나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A으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도급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 기성고 비율을 조사·확인하는 등 대출이 정당하게 실행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 원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기성고를 조사하고, 정당한 기성고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기성고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시하여 대출금이 유용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책임을 면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은 중고기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저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면서도 시공사와 공모하여 계약서 등 서류상으로는 고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성고대금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송금토록 한 다음, 시공사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유용한 사실, 즉, 해썹시공계약 및 기계공급계약에 따른 실제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또는 원고의 내규 등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썹설비공사 등이 진행 중이었다. 위와 같이 A과 시공사가 통모하여 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서류상으로 또는 시공사에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허위의 서류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건축 내지 기계 전문가가 아닌 원고의 직원들은 공사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원고 내지 그 담당직원은 2010. 9.경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당시 원고의 직원들이 A 등으로부터 금품을 다소 제공받았다 하여도 이는 일반적으로 대출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이지 허위의 서류제출 등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과 같은 '기업시설 중소기업재정자금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서류 심사를 통한 지원결정과 피고의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한 보증서 발행 절차가 선행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0. 2. 4.자 '중소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예정 통보서', 피고로부터 2010. 6. 9.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피고도 A이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기초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행하기 전에 6차례에 걸쳐 직원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기성고를 조사하고, 해썹시공계약의 시공사인 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인 H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C가 작성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그 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 견적서 등의 도급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 등을 C에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원고는 기계공급자인 E기계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E기계에 조회하여 그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 견적서 등의 도급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E기계의 대표인 F는 2010. 6. 15. 원고에게 '귀행에 제출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은 사실과 일치하며, 사실 내용과 다를 경우 이에 따른 문제점 발생시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피고가 지급할 금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잔액 437,000,000원과 이자 6,067,710원을 합한 금

443,067,710원 및 그 중 원금 437,000,000원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3.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인 연 4.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성구

판사최연미

판사정경환